

전공전환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5.01.13. 개정 2025.02.0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과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의 후속 조치로 전임교원의 전공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 전공전환 교원은 모집정지, 폐과 및 통폐합 등 학과구조조정 대상 학과의 교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교원 수급 계획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전공전환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전공전환을 제한한다.

1. 퇴직 잔여기간이 7년 미만인 자
2. 그 밖에 전공전환 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전공전환 등 신청) 전공전환 희망 교원은 소정의 전공전환 신청서(별표서식 제1호)를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이를 즉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공전환 등에 대한 학과 동의) 전공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전입 학과(별표서식 제2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공전환 등의 기간) ① 전공전환에 따른 휴직은 정관 제41조(휴직의 사유) 제11호, 휴직 기간은 정관 제42조(휴직의 기간)제10호를 적용하여 3년 이내로 한다.

② 해당 기간 내에 학위 등을 취득하여야 하며, 강의는 하지 않는다.

③ 유사 전공으로 인한 소속을 변경하여 학위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①항의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6조(전공전환 등의 심사·결정) ① 전공전환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공전환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대상자에 대해 심사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때에는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④ <삭제 2025.02.05.>

⑤ 대상자로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무처장은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5.02.05.>

제7조(전공전환자 등의 처우) ① 전공전환 기간에는 휴직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전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유사전공 인정으로 소속 학과 변경이 되는 자는 휴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전공전환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정관 제44조(휴직교원의 처우) ②항을 적용하여 기본급만 지급한다.

③ 전공전환을 위한 일체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 방침에 의하여 필요할 경우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전공전환 등이 확정된 자에게 특별업무 부여 등 처우는 대학과 개별 서면 합의에 따른다.

제8조(전공전환자 등의 의무) ① 전공전환 대상자는 휴직 기간 중 전입 학과와 관련된 학위(또는 면허)를 취득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전공전환 대상자는 휴직 기간 종료일까지 학위 취득 등 자격요건의 충족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공전환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즉시 교무처장에게 전공 전환 변경계획서(별표서식 제3호)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공전환 기간 중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전공전환 자격기준에 미달 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전공전환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무관장) 전공전환 등에 관한 사무는 교무팀에서 관장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제3호)

전공전환 변경계획서

신청인	소속 학과명		직 급	
	성 명			
선택유형	<input type="checkbox"/> 대학원 <input type="checkbox"/> 산업체연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 변경사항				

혜전대학교총장 귀하